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 년 월 일

청 원 인

성 명 :

주 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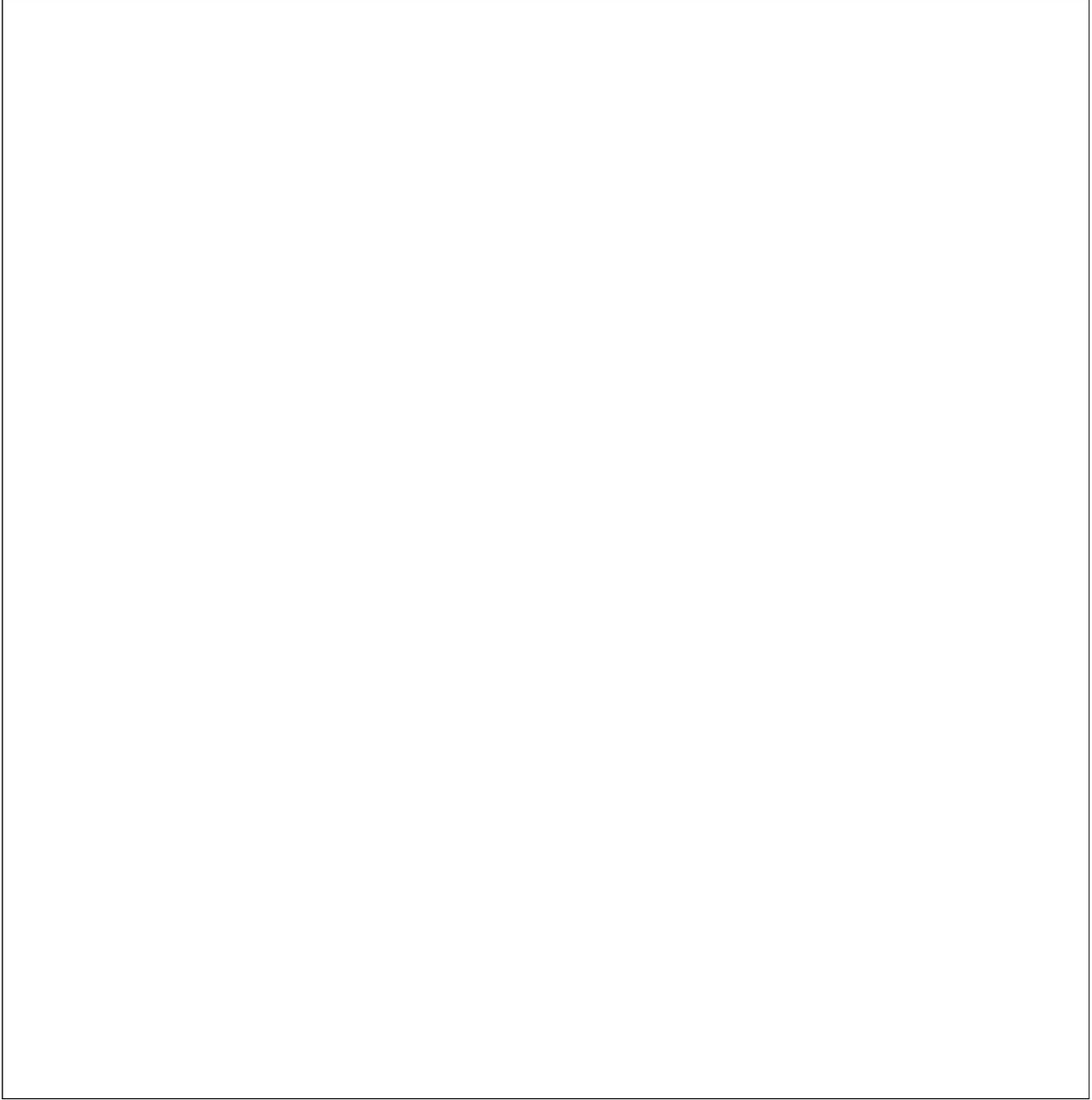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_____ (인) 외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이병훈
건명	대학 등록금 인하
소개년월일	2011년 8월 4일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 이유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GDP가 가장 높은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약 2배의 차이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사립대 등록금 비율은 15%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국, 공립대 측에서 봤을 때에는 오히려 5.2%가 높습니다. 또한 교육환경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나는 GDP임에도 국, 공립대 사립대 모두 합쳐도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 때문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으며, 그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선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록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청소년 의회에서 등록금 인하 정책 법안을 제안합니다.

2. 주요 골자

● 고등교육법 제 11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500명이 정원인 학교를 기준으로 교직원2명, 관련 전문가 2명, 교내 학생 1명, 타학교 학생회 간부 1명, 정부 소속의 감사 2명(사립 대학일 경우 재단 인사 한명 포함)으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 교내 학생 인원에 따라 비율적으로 등록금 심의 위원회 인원을 증가, 감소할 수 있다.

※ 등록금 심의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은 반드시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문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 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500명이 정원인 학교를 기준으로 교직원2명, 관련 전문가 2명, 교내 학생 1명, 타학교 학생회 간부 1명, 정부 소속의 감사 2명(사립 대학일 경우 재단 인사 한명 포함)으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 교내 학생 인원에 따라 비율적으로 등록금 심의 위원회 인원을 증가, 감소할 수 있다. ※ 등록금 심의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은 반드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추가 법안 : 등록금 심의 위원회는 1년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 혜택 기준에 대한 법안

- 각 대학교 소득 백분위 50%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의 학생들에게는 소득에 따라 대학 등록금의 인하를 차등적으로 실시한다.

● 교육 기본법 제 16조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 경영자는 대학의 적립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 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 관리한다.

●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문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 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 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 관리한다.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 경영자는 대학의 적립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 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 관리한다.

청원인 성명 : 이병훈, 김범수, 문대천, 배상준, 양인혜, 이성진, 이의준, 이태환, 이희수, 최선영, 최주성

청원인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510-605

청원인 번호: 010) 9983-0196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는 사본)이며
,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 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